

#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재활치료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재활치료 지원사업(이하 “사업” 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계약자” 라 함)와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계약상대자” 라 함)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 한다.

**제 1 조(목적)** 이 협약서는 “계약자” 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함은 “계약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법인)을 말한다.

② “서비스 대상자”는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세대에 속한 자를 말하며, 그 가족이라 함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록된 세대원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협약서는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한 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4 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이 협약서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 5 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지침을 별도 교부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업 계획서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참여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자 등 관계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하여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한 근무 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협약기간 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참여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 3개월 전에 그 뜻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필요한 경우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과가 현저히 낮을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서비스 대상자의 상담·문의 등에 대하여 성의를 갖고 친절히 응하여야 한다.

8. 고의로 사업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서비스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금품 등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9. 정책 변경, 사업내용이나 예산액 변경으로 “계약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약자”가 관련 지침 등으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1. “계약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약정해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자”는 사실 확인 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회사정리 또는 파산을 신청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3.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다 같이 협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제 7 조(책임한계)**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운영으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계약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한 금액의 상당액을 “계약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8 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인 복지사업 처리지침을 준용하며,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해석 및 일반적 통념에 따른다.

②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1. .

“계 약 자”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168-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계약상대자” : ○○시 ○○구 ○○동 ○○-○○

○○○ 대표 ○○○ (인)